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8. 2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. 8. 26.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9. 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

가. 제안이유

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 해소 및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행보조차 지원 및 표창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성인용 보행기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0조제3항)
- 2) 구청장 표창 수여 규정 신설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고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.
-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.
- **주요 개정내용**
 - 거동이 힘든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‘성인용보행기 지원’ 규정 신설 (안 제10조제3항)
 -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공경 분위기 형성을 위해 어버이날,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구청장 표창 수여 규정 신설 (안 제12조)
- **검토 종합결과**, “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해소를 위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” 및 “어버이 날, 노인의 날에 구청장표창 수여” 규정은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공익을 해하는 바가 없어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의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